## [별표 3] 장애 종류별 편의제공 기준

| 장애 종류 및 정도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편의제공 내용 및 방법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지체 장애      | 상지 중증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험시간         | ·시험시간 1.5배 연장   |
|            | (장애의 정도가 심한                    | 답안작성 방법      | · 답안 대필         |
|            | 장애인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타           | • 별도 시험실 배정     |
|            | 상지 경증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험시간         | ・시험시간 1.2배 연장   |
|            | (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                  | 답안작성 방법      | · 답안 대필         |
|            | 않은 장애인)                        | 기타           | •별도 시험실 배정      |
|            | 하지<br>(장애정도 구분 없음,<br>척추장애 포함) | 기타           | ·별도 시험실 배정      |
| 뇌병변 장애     | 장애정도 구분 없음                     | 시험시간         | ·시험시간 1.5배 연장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답안작성 방법      | · 답안 대필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타           | • 별도 시험실 배정     |
| 시각 장애      | 중증<br>(장애의 정도가 심한<br>장애인)      | 시험시간         | ・시험시간 1.7배 연장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문제인지방법       | •확대 문제지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택1)         | ·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답안작성방법       | · 답안 대필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타           | · 별도 시험실 배정     |
|            | 경증<br>(장애의 정도가 심하지<br>않은 장애인)  | 시험시간         | ·시험시간 1.5배 연장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문제인지방법       | •확대 문제지    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택1)         | ·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타           | • 별도 시험실 배정     |
| 청각 장애      | 장애정도 구분 없음                     | 기타           | ·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· 보청기 사용 허용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· 별도 시험실 배정     |

- ※ 편의제공사항은 응시자의 요청 및 시험시행 환경 등에 따라 시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
- ※ 실기시험으로 간주되는 실습과제(1개 문항)의 제출시간은 장애 종류별 시험시간과 동일하게 연장함
- ※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,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(장애정도 표기 필요, 소견서 불인정)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
- ※ 복합(상지+하지) 지체장애의 경우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한 기준으로 편의를 제공함
- ※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
- ※ 제출서류(택1)
  -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·도지사·군수·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(명서)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. 다만,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1부.
  -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및 상이등급과 상이부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(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) 각 1부.
  -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원본 1부.